

#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4년 10월 4일(제15차 이사회)  
개정 2004년 12월 6일(제16차 이사회)  
개정 2004년 12월20일(제17차 이사회)  
개정 2007년 9월 4일(제43차 이사회)  
개정 2009년 9월17일(제60차 이사회)  
개정 2011년 9월 5일(제79차 이사회)  
개정 2014년 7월25일(제96차 이사회)

##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정관 제16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 총회의 의결권자 이자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과 정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장 등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대의원 및 임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정중립 유지의무 등)**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유리하도록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 제2장 대의원의 선거관리

**제4조(대의원 배분)** 협회장은 정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중 매년 9월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아니 한 회원(4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기준으로 시도회별로 그 비율에 따라 대의원을 배분하되, 대의원

이 될 수 있는 자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비정산 기준일은 매년 9월 말일로 하되, 당해연도 6월분까지 납부한 자
2. 회비정산 기준일인 9월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3. 회비정산 기준일인 9월 말일 현재 해당 시도회 회원인 자

(2014.7.25. 개정)

**5조(대의원 선출)** ① 제4조의 대의원의 선거권은 매년 9월 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회원(4월분까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행사한다. 다만, 입회 후 6개월 미만의 자는 9월 말일 기준 1개월분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의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정관제18조제1항에 의거한 의장(협회장)
2. 감사
3. 시도회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자

③시도회는 배분된 대의원을 시도회의 지부별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2009.9.17 개정, 2014.7.25. 개정)

**제6조(시도회 선거구)** 하나의 선거구로 한다. 다만, 해당 시도회는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하나의 지부 또는 수개의 지부를 분할·합병하여 선거구로 할 수 있다. (2014.7.25. 개정)

**제7조(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시도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부에 선거관리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선거관리위원장 포함)로 구성한다.

③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은 정관 제35조제1항 및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회장이 시도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011.9.5. 개정)

**8조(대의원 선거인 명부 열람 등) ①** 명부는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014.7.25. 개정)

② 시도회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에 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는 선거인 명부에 누락 혹은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정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 선거공고 등) ①** 시도회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7일전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하며, 게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선거공고문(예시)에 의한다.(2011.9.5. 개정)

② 시도회별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공고와는 별도로 선거권자에게 선거일정 및 후보등록방법, 선거부정신고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을 관련서식과 함께 공고일 전에 각 시도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권자의 열람·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9.5.)

**제10조(후보등록 등) ①**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의원 후보등록 신청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는 시도회 사무국에서 일반사무와 구분하여 운영·관리한다.

**제11조(선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선거인의 희망에 따라 거수, 기립, 박수 등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11.9.5. 개정)

②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의 성명이 연기된 **【별지 제3호 서식】**의 투표용지에 기표하여야 한다.

③ 각 선거구는 전 항에 의한 회의록, 투표용지 등 선출자료를 시도회 사무처에

하며, 시도회 사무처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2011.9.5. 신설)

④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를 한 순위에 따라 대의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득표자 순위가 동수인 경우에는 회비납부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당선자로 한다.

⑤선거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 범위 이내에서 입후보한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대의원명부 작성·제출·공람)** 시도회장은 시도회별로 배분된 수에 해당하는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일 30일전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총회공고 전에 확정된 대의원 명부를 작성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총대의원 명부 공람 후에는 대의원을 개선할 수 없다.

**13조(준용규정)** ①시도회 대의원 투표의 무효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개표 등 관리에 관해서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장 임원 등에 관한 선거관리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①협회장은 정관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7인(위원장 1인 포함) 이내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014. 7. 25 개정)

③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공고
2. 임원선출에 대한 총회의 의장
3. 선거관리업무 총괄

####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사무처는 선거관리에 관한 사무를 일반사무와 구분하여 운영·관리한다.

⑤각시도회 선거관리위원은 본회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23조 ⑤항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여 위반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1. 9. 5 신설)

⑥선거관리위원장은 각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23조 ⑤항의 위반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여 조치하고 그 내용을 즉시 본회 및 16개 시도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2011. 9. 5 신설)

**제15조(회의개최 등)** ①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회의목적을 기재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후보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선거광고)**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 공고일에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정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을 선거광고 후에 협회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17조(회장 입후보등록)** ①협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공탁금 500 을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5)

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후보등록 신청서

2.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완납확인서 (협회 사무처 발행)
3. 이력서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1개월 이내 발행)
5. 사진(3×4cm) 2매
6. 선거공약 요약서 1부
7. 후보 선거본부장 1인의 프로필
8.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서약서(협회 양식)
9. 신원증명서(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요청) 1부
10. (대의원 30인 이상. 복수추천은 무효로 한다) 1부 <2009.9.17 개정>

②제1항 각호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견될 경우에는 입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8조(감사 입후보등록)**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서류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후보자의 공탁금은 200만원으로 하고, 추천 대의원은 20인으로 한다.  
(2011.9.5. 개정)

**19조(총회 선출직 이사)** ①정관 제26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거 시도회총회의 선출로 제안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하는 인준직 이사후보는 총회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회총회에서 이사로 제안하기로 선출한 회의록 사본 1부
2. 선거공고일 현재 회비완납확인서(협회 사무처 발행) 1부
3. 이력서 2통
4. 주민등록등본 2통(1개월 이내 발행)
5. 사진(3×4cm) 2매
6.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서약서(협회 양식) 1부
7. 신원증명서(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요청) 1부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자는 이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에는 총회에 이사 인준을 상정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선출 이사)** ①정관 제2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협회장이 이사회에 제청하여 선출하는 제청 이사후보로 협회장이 지명한 자는 이사회 개회 1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사회 개회공고일 현재 회비완납확인서(협회 사무처 발행) 1부
2. 이력서 2통
3. 주민등록등본 2통(1개월 이내 발행)
4. 사진(3×4cm) 2매
5.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서약서(협회 양식) 1부
6. 신원증명서(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요청) 1부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임원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한 자는 이유를 명기하여 반려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에는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협회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1조(공탁금의 환불 등)** 공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1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2011.9.5. 개정)

1. 선거 결과 총유효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한 경우
2.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3. 후보등록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22조(피선거권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정관 제30조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자
3.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주택관리사(보)가 될 수 없는 자

6. 선거관리위원

7. 선거공고일 현재 협회 및 협회산하기관 외의 주택관리 관련단체의  
(단, 관리소장 제외)

②임원이 그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해임된 자는 그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23조(선거운동)** ①후보자는 선거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총회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선거운동은 대의원에 대한 서신발송·대의원 방문·모임 등에 참석하여 정견발표, 인터넷을 통한 정견발표, 후보자간의 온·오프라인 상의 정책토론(합의된 후보자에 한함.), 협회 홈페이지 또는 후보자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홍보, 모바일 문자 발송, 이메일 발송 및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한다.(개정 2011.9.5)

③사무처는 입후보등록을 마친 자에게 선거인의 명부 및 주소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사무처는 입후보자의 이력 및 선거공약사항 등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후보자 및 대의원은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본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후보자나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011. 9. 5 신설)

⑥ 시도회장은 선거운동기간중 운영위원회 등(해당지역 대의원 포함)에 1회이상 협회장 후보자를 참석토록 하여 각 후보자별 5분이상 10분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1. 9. 5. 신설)

**제24조(선출방법)** ① 정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장 등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다만, 정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인준이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에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거수 또는 기립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표하지 아니한 경우
3. 2인 이상의 후보에 기표를 한 경우
4. 어느 후보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시한 표시 이외의 표시를 한 경우

② 정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선출 시 기표는 2인으로 하며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3인 이하인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014. 7.25 개정)

**제25조(개표등 관리)** ①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자 및 각 후보자가1인씩 지명한 참관인이 이를 행한다.

②선거관리위원장은 제3자 개입이 될 수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뜻을 대의원들에게 선포하고, 선거관리위원이 함께 투표함을 검사한 후 참관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개함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개표록, 집계록 등 선거관련 서류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봉인하여 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당선자의 결정·공고)** 정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결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대의원 앞에 당선인 결정을 선포하고, 지체 없이 당선자에게 당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간신문과 협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 회원이 널리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①후보의 자격·표결결과·투표의 효력 등에 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7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당선이 확정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총회장소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임기개시)** ①임원에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정관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년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위된 경우 및 의원면직으로 보선하는 경우에는 선출된 다음 날로부터 그 임기를 개시한다.

**제29조(예산의 편성)**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4장 보 칙

**제30조(관련서류의 보존)** ①선거관련 서류는 사무처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대의원 명부는 사무처가 3년간 보존한다.

**제31조(규정의 준용)** 제3장의 규정은 시도회에서 총회에 제안하는 이사 및 시도회장과 시도회 감사의 선출의 선거관리업무에 준용한다.

**제32조(규정 외 사항)** 선거관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정관 및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시도회 총회의 구성)** ① 시도회는 정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에 의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대의원 선출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 제4조, 제5조를 적용하되, 회비정산 기준일을 8월 말일 이전으로 할 수 있다.

② 총회를 회원에 의한 총회로 운영하는 경우 그 회원의 기준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2014. 7.25 개정)

부 칙<2004. 11. 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11조(현행 제19조), 제12조(현행 제20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2007. 9. 4>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 1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이사회가 의결한 날(2011.9.5.) 이후 10일이 경과된 날(2011.9.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시도회운영세칙과의 관계)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저촉하지 않는 한도에서 각 시도회운영세칙은 효력이 있고, 각 시도회운영세칙이 이 규정과 저촉되거나 각 시도회운영세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등)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위촉된 시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7. 25>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예시(양식)

공고 제 20 - 00 호

## 대 의 원 선 출 공 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관 제16조제5항,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도회 선거구의 대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출인원 : 대의원 ○○명
2. 선거일 : 20 년 월 일 시 ~ 20 년 월 일 시
3. 선거장소 : 시도회( 지부)
4. 후보등록기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오전(후) 시
5. 후보등록장소 : 시도회 사무실( 지부 )(TEL: )
6. 후보등록서류
  - 1) 대의원 후보자등록신청서(협회양식) 1부
  - 2) \*\*\*

20 년 월 일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시도회  
選舉管理委員會 委員長 ○○○



제3호 서식】

( )번 ( )번		위원장의 인																																	
대의원 투표용지																																			
<table border="1"><thead><tr><th>기 호</th><th>1</th><th>2</th><th>3</th><th>4</th><th>5</th></tr></thead><tbody><tr><td rowspan="2">입후보자</td><td>홍</td><td>박</td><td>정</td><td>최</td><td>김</td></tr><tr><td>길</td><td>길</td><td>길</td><td>길</td><td>길</td></tr><tr><td>성 명</td><td>동</td><td>동</td><td>동</td><td>동</td><td>동</td></tr><tr><td>기 표</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기 호	1	2	3	4	5	입후보자	홍	박	정	최	김	길	길	길	길	길	성 명	동	동	동	동	동	기 표					
기 호	1	2	3	4	5																														
입후보자	홍	박	정	최	김																														
	길	길	길	길	길																														
성 명	동	동	동	동	동																														
기 표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시)(도)회選舉管理委員會																																			



제5호 서식】

( )번 ( )번		위원장의 인																																
협회장 · 감사 투표용지																																		
<table border="1"><thead><tr><th>기 호</th><th>1</th><th>2</th><th>3</th><th>4</th><th>5</th></tr></thead><tbody><tr><td rowspan="2">입후보자</td><td>홍</td><td>박</td><td>정</td><td>최</td><td>김</td></tr><tr><td>길</td><td>길</td><td>길</td><td>길</td><td>길</td></tr><tr><td>성 명</td><td>동</td><td>동</td><td>동</td><td>동</td><td>동</td></tr><tr><td>기 표</td><td></td><td></td><td></td><td></td><td></td></tr></tbody></table>						기 호	1	2	3	4	5	입후보자	홍	박	정	최	김	길	길	길	길	길	성 명	동	동	동	동	동	기 표					
기 호	1	2	3	4	5																													
입후보자	홍	박	정	최	김																													
	길	길	길	길	길																													
성 명	동	동	동	동	동																													
기 표																																		
大韓住宅管理士協會 選舉管理委員會																																		